

스마트폰 수험총서

공부혁명 엠북 (mbook.kr)

MEDICAL CARE & HEALTHY



방사선사

의료관계법규

- ☆ 3시간 20분 완성, 고득점용
- ☆ 의료법, 의료기사법, 지역보건법
- ☆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종합 정리

도서명 : 방사선사 의료관계법규

ISBN : 979-11-94286-73-8

발간일 : 2025-02-13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23,000원



방사선사 의료관계법규

[목차]

제1권 의료법(p4)

제2권 의료기사법(p239)

제3권 지역보건법(p317~390)

[약어]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부령은 보건복지부령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예정

초록색은 최근(1~2년내) 개정 내용

제1권 의료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6)

제2장 의료인(p20)

제3장 의료기관(p86)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p151)

제5장 의료광고(p155)

제6장 감독(p169)

제7장 삭제

제8장 보칙(p206)

제9장 벌칙(p227)

[약어]

법은 의료법

국가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 군, 구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청장은 질병관리청장

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등은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사등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학등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3조

1.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 받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국민 건강 보호/증진

2. 의료인

- 장관 면허 받은 의사등, 조산사, 간호사

- 다음 임무를 수행해 국민보건 향상,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

가) 의사는 의료, 보건지도

나)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 구강 보건지도

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 한방 보건지도

라) 조산사는 조산, 임산부/신생아 보건, 양호지도

마) 간호사(25년 6월 21일 부터는 같은 내용으로 간호법에 규정)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등의 지도하 시행하는 진료 보조
- 간호 요구자 교육/상담,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대통령령상 보건활동
- 간호조무사 업무보조 지도

3.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이나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 하는 곳
-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해 고시

가.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등이 주로 외래환자 대상 의료행위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나.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 임산부/신생아 대상
보건활동, 교육/상담

다.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등이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

1) 병원등 (병/치/한/요)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요양병원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병원등 요건 갖춘 의료기관 포함

2) 정신병원, 종합병원

4. 병원등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 갖춰야 함
- 요양병상은 장기입원 환자 대상 의료행위 위해 설치

5. 종합병원

가. 요건

- 1) 병상 100개 이상 및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둘 것

2) 필수진료과목

a) 병상 100~300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포함 7개 이상의
진료과목

b) 병상 300 초과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포함
9개 이상 진료과목

나. 추가 진료과목

- 필요시 설치/운영

- 전속아닌 전문의 둘 수 있다

6. 장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 개요

- 1) 지정 요건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전문 종합병원 지정
- 2) 지정시 지정 요건과 전문성 평가 요
- 3)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 4) 전문기관/단체에 평가 위탁

나. 지정 요건(기준)

1) 진료기능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다음 진료과목 중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해 20개 이상 진료과목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1명 이상 둘 것

a) 필수진료과목(9) (내외소/ 산영마/ 진정치)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b) 선택진료과목(18)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나)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2) 교육기능

-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레지던트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받았을 것

3) 인력/시설/장비 등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 당 의사 1명, 2.3명 당 간호사
1명 이상

나) 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 설치, 지정
신청일 이전 1년간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다) 품질관리검사에서 CT, MRI,
유방촬영용장치 적합 판정

라)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협력체계

구비

마) 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운영체계,
통제시설, 보안인력 구비

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인력, 중환자실병상,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확보

4)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율

가)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34% 이상
-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12% 이하

- 장관 고시 질병 외래환자 7% 이하

나) 장관 고시 기준에 따른 진료실적

5) 의료서비스 수준

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받았을 것

나) 심장질환, 뇌질환, 암, 항생제 사용 수술 등

장관 고시 평가 항목에 대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장 최근 영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 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1/2

이상

7. 장관의 **전문병원 지정**

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 특정 질환에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하는 병원 지정

나. 요건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 등이 부령 기준에 해당

2) 부령 수 이상 진료과목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둘 것

3) 최근 **3**년간 의료기관, 개설자가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 받은 사실 없을 것(25년 6월 21일 시행)

다. 지정시 지정 요건과 진료 난이도 평가 요

라. 지정받은 경우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마. 거짓/부정으로 지정/재지정 받은 때
지정/재지정 취소해야 함

바. 다음은 지정/재지정 취소 가능

1) 지정/재지정 취소 희망

2) 평가 결과 전문병원 요건 미비

3) 25년 6월 21일 부터

- 요건 미비로 시정명령 받고 미이행

-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 받은 때

- 소속 의료인, 개설자,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사. 전문기관/단체에 평가업무 위탁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4~21조

1.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가. 공통